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문금주·권칠승·김문수

박홍배 • 김영배 • 어기구

양문석 • 이정문 • 김원이

박 정 • 문정복 의원

(11인)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수산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저수온 · 적조 피해 등이 연

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위협에 받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 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 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 다.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 격의 산정 및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최저

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5 항까지 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 장제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장에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 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 하여 주요 농수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 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 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 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최저가 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 생산 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식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이하 "농수산물 최저 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 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품목을 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 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 고 이를 고시한다.

- ②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 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 1. 대상 품목의 선정
- 2. 기준가격의 산정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
- 5.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또는 해양수산부차 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4(종합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 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시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6조의2(농수산물 최저가격보
	장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
	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
	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
	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
	여 주요 농수산물로 지정된 품
	목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
	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
	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
	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
	6조의3에 따른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최
	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 생산을 안정

<신 설>

시키고 소비자 식생활을 보호 하는 제도(이하 "농수산물 최 저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 심의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최저 가격보장제가 필요한 품목을 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②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 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해양수 산부에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 의위원회를 둔다.
- 1. 대상 품목의 선정
- 2. 기준가격의 산정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
- 5.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관측 및 추계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차관 또는 해양수 산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 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 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 할 수 있다.

1.·2. (생략) <u><신 설></u>

3. ~ 6. (생 략) ② ~ ⑤ (생 략)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종합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고,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6조의2에 따른 농수산

 물 최저가격보장제의 시행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